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750

발의연월일: 2024. 10. 17.

발 의 자:김태선・이훈기・박 정

장철민 • 김태년 • 윤종군

한민수 · 박홍배 · 정준호

김주영 • 이기헌 • 이용우

박균택 • 이학영 의원

(14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직접 부여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제품 생산자 또는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부담하도록 해 사용 후 배출되는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제도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류는 EPR 제도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재고 의류의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브랜드 가치보호를 이유로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멀쩡한 의류를 소각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제품 생산에 사용된 에너지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로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각 행위는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며, 의류 산

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은 섬유업계의 지속가능성과 순환경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에 따라 ERP 제도에 의류산업을 적용시켜 의류 폐기물 감축과 재사용 및 재활용의 책임을 부여하겠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의류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여, 의류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무분별한 의류 소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제16조제1항 개정).

법률 제 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를 "합성수지 또는 알루미늄박이 부착 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
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	무) ①
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	
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	
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	
은 제품·포장재 중 <u>대통령령</u>	<u>합성수지 또는</u>
<u>으로</u>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알루미늄박이 부착된 종이팩,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유리병, 금속캔, 의류 등 대통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	<u> 령령으로</u>
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	
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	
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 · 포장	
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